

2022년 아동분야사업안내

주요변경사항 [아동그룹홈 관련 부분]

※ 본 문서는 아동그룹홈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협의회에서
작성(재편집)한 주요안내사항으로 내용의 변경(수정)될 수 있습니다.

작성출처 :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(T.02-364-1617) / 작성일 : 2022. 03. 04.

No.	구분	페이지	변경내용	비고
1	전체	일괄 반영	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※ ‘보호종료아동’ 명칭을 ‘자립준비청년’으로 변경	
2	[1권]_VI-2. 보호아동의 입·퇴소 및 지원 등	198	• 보호기간 연장 개정안 안내 (‘22.6.22 시행)	-법 제16조의3 신설
3	[1권]_VI-2. 보호아동의 입·퇴소 및 지원 등	207	4. 시설 보호아동 지원 및 관리 가.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지원 공동생활가정 임차급여 지급 특례	-주거급여실시 에 관한 고시 참조
4	[1권]_VI-2. 보호아동의 입·퇴소 및 지원 등	208	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- 동일 그룹홈에 형제, 자매, 남매 등의 보호아동의 경우 개인별 보장 대상임	
5	[1권]_VI-2. 보호아동의 입·퇴소 및 지원 등	208	아동의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 (운영비, 교육비, 기타사업비) 및 공공 요금, 보험료로 편성하여 사용가능	
6	[1권]_VI-2. 보호아동의 입·퇴소 및 지원 등	208	* 주거급여는 공동생활가정의 기타 운영비(임차료)로 지출 가능하며, 임차료로 지출 시 시설회계로 산입	
7	[1권]_VI-3. 시설의 운영	216	1.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1. 시설 설치 및 휴·폐업 등 신고 라. 급식소 설치 등록(「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」) 아동복지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*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」 제21조, 제21조의2, 제27조, 제29조,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,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규칙」 제15조, 제16조 ※ 급식소 미등록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」 제27조, 제29조)	-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등록필요

8	[1권]_VI-3. 시설의 운영	222	다. 시설의 운영 급식위생관리 등 「아동복지법 시행 규칙」제24조 별표3 개정사항 반영	-본문참고
9	[1권]_VI-3. 시설의 운영	240	라.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(아동복지법 제54조의2)	-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련법률 등에 따른 결격사유 추가(본문참고)
10	[1권]_VI-5. 인건비 및 운영비	251	2. 공동생활가정 가. 지원대상 (1) 신규지원 시설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(아동 입소 시점부터 기간 계산)	-아동입소 시점부터 계산한다 추가
11	[1권]_VI-5. 인건비 및 운영비	251	※ '20년 7월 이후 개인시설로 설치신고 후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에 대하여 개인시설로 실질적 운영한 기간도 산입하여 지원 여부 결정 ((2) 비영리법인 전환 시설 준용)	-법인 전환시설의 경우 개인운영 기간도 포함하여 지원여부결정
12	[1권]_VI-5. 인건비 및 운영비	252	(3)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의 시설 그룹홈 평가결과 최하등급(F) 시설 및 평가거부 시설은 보조금 지원 제외 하며, D등급 시설은 컨설팅 후 지방 자치단체의 재평가(6개월)를 통해 보조금 지원 중단여부 결정(재평가 결과 D등급 이하 기관 보조금 지원 중단)	-평가 F등급은 보조금 지원제외 -평가 D등급은 컨설팅 후 재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
13	[1권]_VI-5. 인건비 및 운영비	254	다. 인건비 (1) 지원단가 : 31,127천원(인. 연간)	
14	[1권]_VI-5. 인건비 및 운영비	255	라. 운영비 지원단가 : 351천원(인. 연간)	
15	[1권]_VI-7. 시설관리 등 (행정처분 및 과태료)	267	가. 시설의 지도·점검 등 디딤씨앗통장 매칭 등 특정 아동에게 편중 결연되지 않도록 현장지도	
16	[1권]_VI-7. 시설관리 등 (행정처분 및 과태료)	268	나. 보조금 집행관련 불법수령·횡령 감독 회계관련 서류 조작 - 주·부식비, 기자재 구입비 등 허위 영수증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·정산 - 후원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조작 - 보조금·후원금으로 기 지출한 학원비 등을, 동일 명목으로 아동 계좌에서 인출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 후 서류 조작	

17	[1권]_VI-7. 시설관리 등 (행정처분 및 과태료)	272	다. 사업의 정지, 시설폐쇄 등 처분 시 아동보호조치	-보호자 및 보호아동에게 전원조치에 대해 사전설명과 의견청취 필요
----	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※ 아동보호체계 운영, 면접교섭, 자립지원 등 많은 사항들이 신설 또는 변경되었습니다. 아동분야 사업안내 전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요청드립니다.

[참고]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별 역할

〈표〉 아동보호수행 인력별 역할

업무단계	시·군·구	
	아동보호전담요원	아동학대전담공무원
접수	- 보호대상아동(아동학대 외) 발생 시 접수 상담 - 원가정 보호 가능 시 읍면동 또는 드림스타트(희망복지지원단) 의뢰	- 아동학대신고 접수 * 아동학대 신고 일원화(112)
조사 사정	- 가정환경조사 및 욕구조사 ※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학대전담공무원 조사로 같음	- 현장출동동행요청(경찰, 아동보호전문기관) - 아동학대 조사(피해의심아동, 학대행위 의심자, 주변인 등)
	-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※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생략 가능 - 아동의 일시보호 지원	- 응급조치, 일시보호(즉각분리) 관련 조치 ※ 아동학대 판단(자체사례회의 등)
보호계획 수립 (피해아동보호계획, 개별보호관리계획)	학대이외 사유로 보호조치 개별보호·관리 계획 수립	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전담요원·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
	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 참여 (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)	
조치결정	- 아동의 보호조치(사례회의) -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운영	- 피해아동 보호조치(아동복지법 제15조 분리보호) *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사례결정위원회)를 반드시 거쳐 판단 - 학대행위자 고발 및 사법절차 진행
	사례결정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	
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	-	-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계획서 수립한 뒤 사례관리 실시 * 사례관리계획은 지자체에 통보

업무단계		시·군·구	
		아동보호전담요원	아동학대전담공무원
점검 및 재평가		- 가정위탁, 시설입소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(최소 3개월 마다) - 사례회의 등 통해 보호조치 및 서비스 제공 계획 등 변경 검토	정기적 사례점검(피해아동)
		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의 참여 (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)	
보호 조치 종결	피해아동 사례종결 (보호유지)	- 가정위탁, 시설입소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(최소 3개월 마다) - 사례회의 등 통해 보호조치 및 서비스 제공계획 등 변경 검토	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례관리 종결
	보호조치 종결	사례결정위원회 운영	-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결정* *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사례결정위원회)를 반드시 거쳐 판단
	사례결정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		
사후관리		- 사후관리 - 자립지원 모니터링 - 원가정 복귀 아동 대상 읍면동 또는 드림스타트(희망복지지원단) 의뢰	사례종결 중 장기보호아동 사례이관 (아동 보호전담요원)

〈표〉 아동보호전문기관, 그룹홈, 양육시설 등 역할

업무단계	지역사회	
	아동보호전문기관 (피해아동)	원가정의 보호기관 (양육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, 입양기관)
접수	• 상담	• 보호자의 보호조치 신청 시 상담 및 읍·면·동 보고 ※ 보호자가 읍·면·동 상담에 동의한 경우 • 긴급한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접수상담 및 시·군·구(아동보호전담요원) 보고
조사·사정	• 조사동행(아동학대전담공무원) • 아동학대 판단 의견 공유(아동학대전담공무원) ※ 재신고 사례는 필수	-

업무단계		지역사회	
		아동보호전문기관 (피해아동)	원가정의 보호기관 (양육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, 입양기관)
보호계획 수립 (피해아동보호계획, 개별보호·관리계획)		피해아동보호계획 수신 및 의견 공유(아동학대 전담공무원)	-
		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 참여 (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)	
조치결정		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지원	-
		사례결정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	
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		-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(아동학대전담공무원) - 서비스 제공	-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시·군·구 보고 - 원가정 지원(부모교육, 상담 등)
점검 및 재평가		- 정기적 사례점검(피해아동) -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※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의 경우 아동보호 전담 요원과 공동 수행	- 양육상황 시·군·구 공유 - 시·군·구 양육상황점검 협조
		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관련 필요 시 사례회의 참여 (대상아동 및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참석자 조정 가능)	
보호 조치 종결	피해아동 사례종결 (보호유지)	- 종결 사유 발생 시 종결회의 - 분리보호(시설입소, 가정위탁 등) 유지 시 관련 내용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이관	-
	보호조치 종결	- 가정복귀 필요 시 상황공유(아동학대전담공무원, 아동보호전담요원) -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및 가정환경조사 서 제출(아동학대전담공무원)	아동가정복귀 의견서 제출 (양육계획서(보호자용)동봉)
		사례결정위원회 참석 및 의견 개진	
사후관리		가정복귀 후 사후관리 공동수행(아동보호전담 요원)	- 사후관리 협력 - 연령도래아동의 자립지원

[참고] 보호아동 면접교섭 관련 절차 및 역할

<표> 면접교섭 절차

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(아동보호전담요원)		아동복지시설 (가정위탁지원센터)
• 면접교섭 계획 수립 -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(가족) 간의 면접교섭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'개별 보호·관리 계획'에 포함 • 면접교섭 이행 및 모니터링 -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복지시설(가정위탁지원센터)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 모니터링	→ ←	• 면접교섭 이행 - 보호대상아동의 '개별 보호·관리 계획'을 바탕으로 '서비스제공 계획서'에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실시 • 면접교섭 결과 공유 - 면접 이행 후 '면접교섭 결과보고서' 작성 및 양육상황 점검 시 공유

가. 면접교섭 지원계획 수립

- 1) 작성주체 : 아동보호전담요원(고유업무)
- 2) 작성서식 : [서식.1] 개별 보호·관리 계획서(피해아동보호계획서) / p.327

나.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

- 1) 작성주체 : 아동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담당자
- 2) 작성서식 : 서비스제공 계획서 / p.332

다. 면접교섭 이행 및 결과보고

- 1) 작성주체 : 아동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담당자
- 2) 작성서식 : 면접교섭 일지(결과보고서) / p.334

마. 면접교섭 이행결과 모니터링

- 1) 작성주체 : 아동보호전담요원(고유업무)
- 2) 작성서식 : 양육상황 점검표 / p.336

※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아동분야사업안내 1권 부록(p. 311) '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'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